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입법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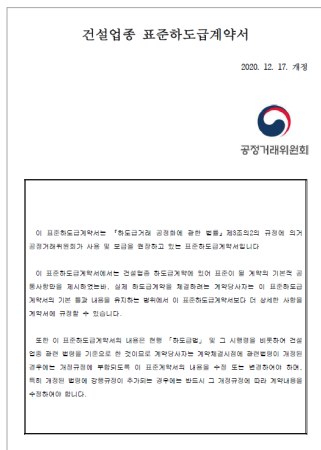
- ④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요
- ④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부당특약의 관계
- ④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실태조사
- ④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개선의 당위성
- ④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개선 관련 입법안 평가
- ④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입법 대안 제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요

##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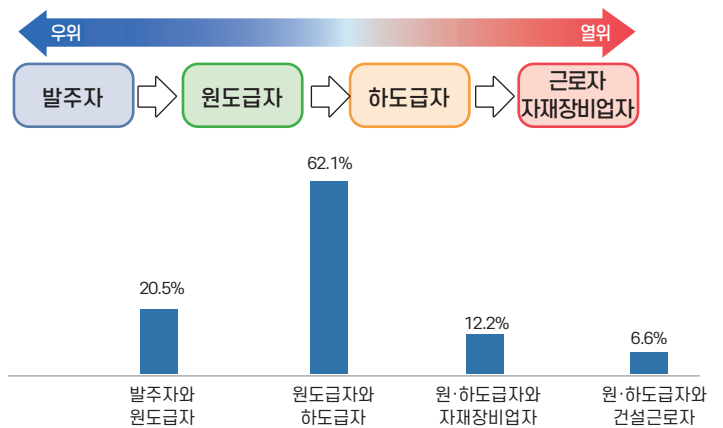
- 1995. 1. 5.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고 업종 특성을 고려한 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권장 제도를 도입하였음**
  - 2022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종·조선업종·자동차업종 등 약 50개의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사용·권장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기반으로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표지, 총칙·시공·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보칙·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의 본문과 비밀유지계약서의 별첨으로 구성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세 계약사항은 현장설명서·특수조건·약정서 등에서 규정 가능
- 건설 불공정거래는 하도급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피해 역시 크기 때문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중요함**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건설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정도가 높은 생산단계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법적 효력

- 현행 다수의 법제에서는 계약당사자의 공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법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표준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표준근로계약서 등
  -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는 법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표준가맹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관련 법제 및 효력

구분	법제	내용	위반시 제재
강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표준계약서	• 없음
	민간임대주택법	표준임대차계약서	• 1,000만원 과태료
	외국인고용법	표준근로계약서	• 500만원 과태료
권장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	• 없음
	가맹사업법	표준가맹계약서	• 없음
	상가임대차법	표준계약서	• 없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부당특약의 관계

## 부당특약 설정 및 규제 형태

-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 즉, ‘부당특약’과 표리(表裏)관계에 있음
  - 실제 부당특약은 변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원사업자의 자체 계약서,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등에서 대부분 설정
- ⓑ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부당특약을 무효로 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호받지 못함
  - “하도급법”은 법률과 시행령 외에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중층적 법규를 통하여 부당특약 방지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의 내용 및 체계에 따라 부당특약을 유형화하고 무효화하도록 규정

### 부당특약 유형

#### 「건설업중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5조

-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체결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하도급계약의 형태, 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그 밖에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부당특약을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으로 규정

##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

- ⓐ 오늘날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력과 제재 정도가 상이하여 부당특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법제: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 부당특약 효력 유효화 법제: “하도급법”, “지방계약법”

### 부당특약 관련 법제 및 효력

구분	법제	내용	위반시 제재
무효	국가계약법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제3항) •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법 제5조 제4항)	•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제22조 제5항)	• 없음
유효	하도급법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의4)	• 시정조치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 등
	지방계약법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 없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실태조사

### 실태조사 개요

#### ① (조사대상)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가운데 총 328개 전문건설업체가 설문에 참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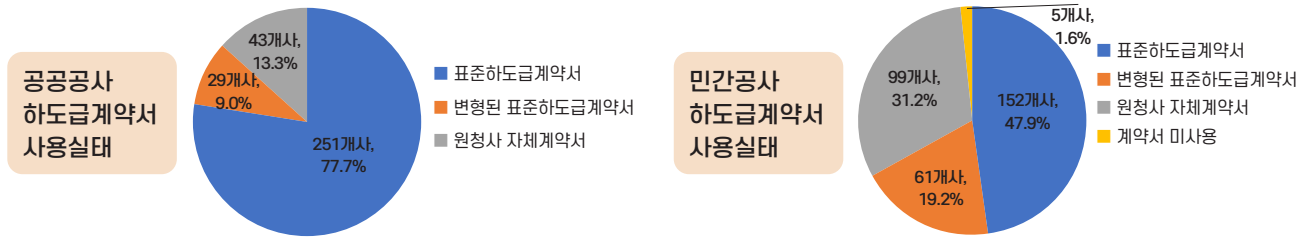
- 전문건설업 업종별로는 철근콘크리트(52개사), 금속창호온실(45개사), 실내건축(36개사), 상하수도(36개사), 토공(26개사), 도장(26개사), 습식방수(25개사)등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02개사, 지방 226개사가 참여

#### ② (조사기간 및 방식) '22년 9월 5일·16일(약 2주간)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협조를 통해 조사하였음

###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③ (하도급계약 실태)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공공공사는 77.7%, 민간공사는 47.9%로 조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2021.12.16) 98.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민간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50% 미만으로 원청사의 자체계약서 사용이 31.2%에 이르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변형하는 경우도 1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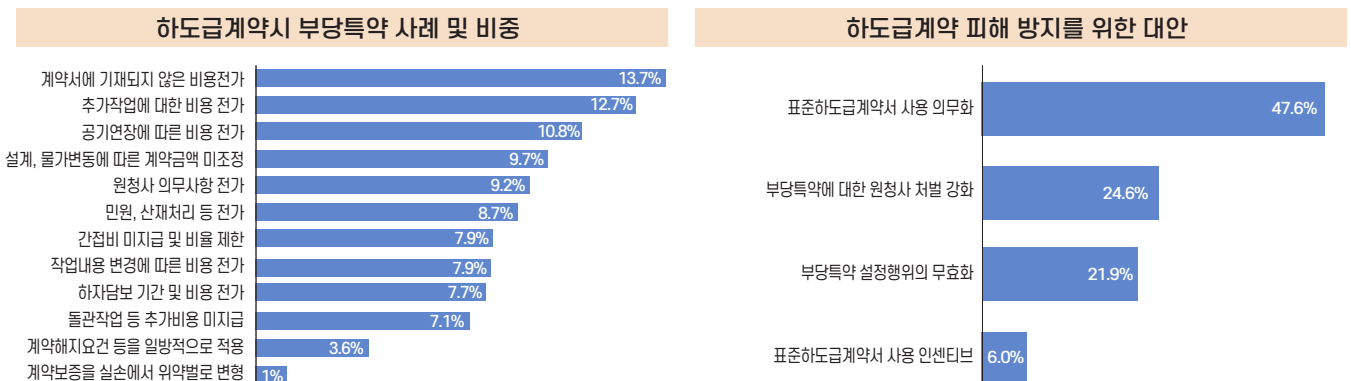
#### ④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부당특약) 하도급계약서 사용 형태에 따라 부당특약 설정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공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부당특약 설정비율은 44.8%이나, 변형된 계약서 또는 원청사 자체 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부당특약 설정비율은 73.6%로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
- 민간공사 역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부당특약 비율은 52.6%인데 비해, 타 계약서는 66.1%로 높은 상황
- 따라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부당특약과 같은 상당수의 불공정거래가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

#### ⑤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사례) 하도급계약에 있어 부당특약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전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작업에 대한 비용 전가”,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미지급” 등이 다음 순으로 나타남

- 또한, 민간공사의 경우 공공공사와 차별적으로 “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미조정”, “민원 및 산재처리 전가”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 ⑥ (하도급계약 피해 방지 대책)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47.6%)”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부당특약에 대한 처벌강화(24.6%)”, “부당특약 설정행위의 무효화(21.9%)”,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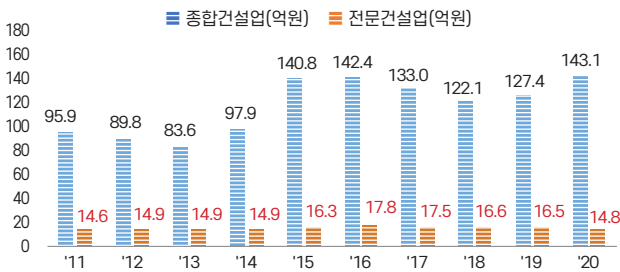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개선의 당위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개선 필요성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변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원사업자의 자체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특약을 설정하여 수익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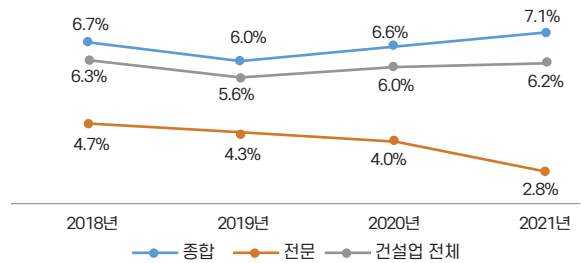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결과 공공공사의 경우 변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9.0%, 원사업자의 자체 계약서 사용률이 13.3% 비중을 차지
- 건설 하도급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업체당 평균 계약액은 2020년 14.8억원으로 10년간 정체와 하락을 반복중이며, 영업이익률 역시 2021년 2.8%로 종합건설업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전문건설업 업체당 평균 계약액 추이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건설 외감기업 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Kis-Value

부당특약의 경우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큰 상황임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조사 결과 부당특약 규정 도입 이후 건설업종의 부당특약에 따른 행정제재는 약 49건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결과 부당특약에 따른 피해를 100% 보전 받은 사례는 13.7%에 불과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쟁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에 대하여 중소기업계와 대기업계는 서로 다른 논리로 찬반 입장을 펼치고 있어, 정부 및 국회가 입법 정책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의 법적 쟁점은 사적 자치의 원칙 위배 여부가 핵심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관련 찬반 입장

구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관련 찬반 입장	부당특약 무효화 관련 찬반 입장
찬성	• 공정한 계약을 위한 경제적 규제가 가능하고 정당한 특수조건을 통하여 현장의 특성 반영 가능	• “국가계약법” 등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고 민사소송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이익 침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음
반대	• 사적 자치의 원칙 침해와 현장의 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움	• 사적 자치의 원칙 침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민사상 효력의 존부를 좌우하는 문제 발생
검토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도모·경제 활성화·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 하도급거래의 전문성을 가진 준입법·준사법 합의제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불필요한 사법적 분쟁 해결 가능

다만, 공공계약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인(私人)과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경제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 공공계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고 하도급대금 역시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할 당위성 존재
- 공공계약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도모하고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입법화 필요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개선 관련 입법안 평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관련 입법안 검토

⊙ 그동안 국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또는 부당특약 무효화에 대한 입법안을 각각 발의·논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입법화되지는 못하였음

- 제19대 국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노웅래 의원, 노회찬 의원),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부당특약 설정 금지(서병수 의원)가 발의되었으나 무산되었고, 대안으로 부당특약 금지 규정만 신설
- 제20대 국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서형수 의원), 부당특약 무효화(조정식 의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고용진 의원)를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입법화 무산

⊙ 제21대 국회에서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또는 부당특약 무효화에 대한 입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며, 현재 국회 계류중임

- 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안)은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송재호 의원 대표 발의(안)은 부당한 특약의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화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부과
-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안)은 부당한 특약의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화

제21대 국회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주요 입법안

김주영 의원(안)	송재호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li> <li>-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특약의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화</li> <li>-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특약의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화</li> </ul>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며, 부당특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의 경우 원·수급사업자 간 거래조건의 획일화로 시장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계약자유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
- 부당특약 무효화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민사소송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부당특약으로 인한 이익 침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입법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찬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관련 입법안 평가

⊙ 제21대 국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하였으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임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벌점을 경감하는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는 부족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의무화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더라도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약정서 등을 통하여 부당특약 설정할 경우 대응 방안이 부재

⊙ 김주영 의원(안)의 ‘공공계약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 의무화’하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반대 논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나, 부당특약 무효화와 연계되지 않은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예상됨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고 있고,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약정서 등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특약 설정 가능
- “국가계약법”상 부당특약 무효화는 공공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계약에만 적용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은 인정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입법 대안 제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입법 방향

-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부당특약 무효화를 동시에 규율할 필요가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통하여 부당특약을 방지하고 정당한 내용의 특수조건을 설정할 것으로 판단
  - 부당특약 무효화를 통하여 기존 법원의 판단 역시 전향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특약 관련 기존 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계약 제9조 및 제10조가 하도급법 제3조의4를 위반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고가 위 제9조에 근거하여 반소 청구 인용판결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제9조 및 제10조가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하도급법은 제3조의4에 위반된 부당한 특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조항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544869 판결)

- ⓑ 우선 “하도급법”상 공공계약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공공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찬반 논의에 대한 논리 극복이 가능
  - 2019. 11. 26. “국가계약법”상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신설과 궤를 같이 하여 공공 하도급계약으로 확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입법안

- ⓐ “하도급법”상 공공계약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화함
  - 공공계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의 원도급계약과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포함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의 경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정당한 특수조건은 설정 가능
  - 부당특약 무효화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특수조건 등에서 설정된 부당특약을 무효화 시키는 법적 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생략) <신설>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②~⑦ (생략)	③~⑧ (현행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같음)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 이 경우 제3조의2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제조등의 위탁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의2(과태료) ①~③ (생략) <신설>	제30조의2(과태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RICON**  
FOCUS | Vol. 09 / September. 2022

발행일 2022. 9

발행인 유일한

발행위원 홍성진, 박선구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http://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19-2007-17호)